

한국 현장과학 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현장과학 교육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Science(KoSSS)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①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③법인의 사업은 출생자·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地位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현장과학 교육의 학술적 회합 개최
2. 현장과학 교육의 학술간행물 발간 및 배포
3. 현장과학 교육의 자료 조사, 수집 및 교환
4. 현장과학 교육을 위한 학술 국제 교류
5. 현장과학 교육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항

②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및 구분)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입회금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과학 교육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과학 및 과학교육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과학 교육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과학 교육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로 이사 또는 간사 2인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관으로 이사 또는 간사 2인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④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 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직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명예 회장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선출 등) ① 차기 회장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30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차기 회장은 임기 시작 전 1년간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등)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이사가 그 업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상근임직원) 법인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회장은 총 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청구가 있은 날부터 4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끊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2조제5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 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총회장에 출석한 회원들로 개회 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6조(총회의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회장의 선임 등) ①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이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 경과하여도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화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제29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인터넷 결의를 실시할 수 있고, 재적 이사 3/4 이상의 응답이 있어야 유효하다.

⑤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재산) ①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 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성원 500,000원 현금 - 기본재산

2. 김중복 500,000원 현금 - 운영재산

④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⑤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⑥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⑨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 ①법인의 예산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복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

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 ①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서류의 작성비치)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의 제출) ①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 ①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두 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을 또는 그 목적의 달성을 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1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원들은 학회의 등록과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창립일로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3. 창립 준비 위원장은 초대 회장이 되어 창립일로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설립발기인 김성원 (서명 또는 날인)

김중복 (서명 또는 날인)

홍명수 (서명 또는 날인)

강성주 (서명 또는 날인)